교육훈련 위탁계약서

모두의교육그룹

본 계약의 ' ㈜에이치앤비파트너 ' (이하 '고객'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모두의교육그룹'(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회사'가 취급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위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범위)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구분	v 우선지원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훈련구분	□정부지원 환급훈련 □ 기업직업훈련카드 □ 유료교육
계약기간	2023. 01 . 01 . ~ 2023. 12 . 31 .	훈련과정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훈련인원	5명	훈련비용	자비부담금 : 0원 (전체훈련비 : 0 원)
교육 담당자명 연락처,이메일	양수연 hnb5679 @ daum.net	사업장관리번호 (고용관리번호 11자리)	50681858790
결제방법	v 계좌이체	전자계산서(면세) 발행 이메일	hnb5679 @ daum.net
훈련비용 납부	v 1형 : '고객'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 '회사'에 납부 □ 2형 : '고객'이 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회사'에 납부하고, 교육 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제2조(훈련 진행에 관한 사항)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훈련시간에 위탁 훈련생들이 성실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수료) '회사'는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 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4조(성실의무) 1.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서 의거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된 것에 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고객'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진다. 3. '고객'은 원활한 훈련비 지급을 위해 고용보험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4. '고객'은 소속 훈련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받지 않도록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제5조(통보의무) '고객'은 훈련생의 변동사항(휴직, 퇴직, 전보 등)발 생 시 즉시 회사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정부지원 환급훈련 이용약관	제1조 계약기간 및 인원 1.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훈련이 종료되어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은 시점까지로 한다. 2. 교육훈련 인원은 고객이 회사에 통보한 훈련생 명단을 바탕으로 훈련이 제공된 인원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액 및 지급 1. 총 계약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을 전체 훈련비로 하며 '고객'은 훈련비용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위탁계약을 실시한다. 2. 고객은 정부지원금을 회사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3. 자비부담금은 교육 훈련 전 선 지급(교육 개강일 7일전)되어야 하며, 교육 개강일 기준으로 훈련인원의 변동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훈련 실시 후 미수료자 등의 발생으로 변동 될 수 있다. 교육 훈련 미수료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을 환급 받지 못한 훈련생은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및 1회에 한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며, 고객은 회사에게 재수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수강 기간 종료 후에도 교육 미수료로 인해 정부지원금 환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자비부담금으로 간주하여 고객이 회사에 추가로 납부한다. 5. 재수강을 실시 하였음에도 수료하지 못한 훈련생의 정부지원금 미환급 비용은 자비부담금으로 간주하여 고객이 회사에게 추가로 납부 한다. 6. 정부지원 한도초과,부정수급 등으로 환급 받지 못한 정부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한다. 7.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환급이 지연된 경우 고객은 고용보험료를 지급 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이 지속되어 정부지원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한다. 8. 훈련인원 확정 후 '자비부담금', 훈련 종료 후 '정부지원금'에 대해 '회사'는 '고객'에게 전자계산서를 발행한다.
유료교육 훈련 이용약관	제1조 계약기간 및 인원 1.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계약일로부터 해당 계약년도 말일로 정한다. 2. 교육훈련 인원은 고객이 회사에 통보한 훈련생 명단을 바탕으로 훈련이 제공된 인원으로 하며, 수강취소기간(개강 후 7일 이내) 이후 확정된 인원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액 및 지급 1. 총 계약금액은 훈련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교육비이며, 교육 인원의 변경 시 자동 조정된다. 2. 회사는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고객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일부터 7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3 년 월 일

[고객]

상호명 : ㈜에이치앤비파트너
사업자등록번호 : 506-81-85879
사업장소재지 : 포항시 남구 대이로 55 경일빌딩 204호

대표이사 **박 익 래** (인)

[회사]

상호명 : 주식회사 모두의교육그룹
사업자등록번호 : 209-88-01773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3, 8층(사당동)

대표이사 **이 영 신** (인)